
2019학년도 단체교섭 협약안(최종) 요지 및 주요 경과 보고

- Ⅰ. 2019학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경과
- Ⅱ. 2019학년도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 요지
- Ⅲ. 2019학년도 임금협약 최종 합의(안)
- Ⅳ. 2019학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경과 보고
- Ⅴ. 2019학년도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I. 2019학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경과

- 2019. 09. 05.(목) _ 2019학년도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통지
- 2019. 09. 10.(화) _ 2019학년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대학(안) 및 교섭위원 통지문 접수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총 장	김 상 호	대표위원	
사무처장	박 홍 조	위 원	단체교섭 대표권 재위임(단체협약)
기획처장	안 성 훈	위 원	단체교섭 대표권 재위임(급여에 관한 협약)
교무처장	김 연 희	위 원	
학생처장	이 윤 호	위 원	
총무부장	김 현 섭	위원 겸 간사	단체협약
기획예산부장	김 영 근	위원 겸 간사	급여에 관한 협약

- 2019. 10. 14.(월) _ 2019학년도 단체협약 및 급여에 관한 협약 조합(안) 및 교섭위원 통지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위원장	이 철 환	대표위원	노동조합 집행부
부위원장	이 승 희	위 원	
기획부장	이 종 준	위 원	
대의원회 의장	김 형 진	위 원	대의원
대의원	이 영 민	위 원	

- 2019. 10. 31.(목) 14:00 _ 교섭위원 상견례 및 제1차 전체 교섭위원 회의
- 2019. 11. 04.(월) _ 2019학년도 단체교섭회의 실무소위원회 대학 본부 위원 통지문 접수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기획예산부장	김 영 근	실무 교섭위원	실무소위원회
총무부장	김 현 섭	실무 교섭위원	

- 2019. 11. 07.(목) _ 2019학년도 단체교섭회의 실무소위원회 노동조합 위원 통지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부위원장	이 승 희	실무 교섭위원	실무소위원회
기획부장	이 종 준	실무 교섭위원	
대의원	이 영 민	실무 교섭위원	

- 2019. 11. 14.(목) 15:00 _ 제1차 실무소위원회
- 2019. 11. 19.(화) 16:00 _ 제2차 실무소위원회
- 2019. 11. 26.(화) 13:30 _ 제3차 실무소위원회
- 2019. 12. 06.(금) 09:30 _ 제4차 실무소위원회
- 2019. 12. 16.(월) 15:00 _ 제2차 전체 교섭위원 회의
- 2020. 01. 02.(목) 15:30 _ 제5차 실무소위원회
- 2020. 01. 23.(목) 10:00 _ 제3차 전체 교섭위원 회의

II. 2019학년도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 요지

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노동조합(안)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최종 합의(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3조(근로조건 저하 및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대학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 및 급여를 저하시킬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근로조건 저하 및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대학은 <u>경영상의 이유나</u>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 및 급여를 <u>조합의 동의 없이</u> 저하시킬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근로조건 저하 및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대학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 및 급여를 저하시킬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근로조건 저하 및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대학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 및 급여를 저하시킬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현행 유지
제5조(조합형태 및 조합원의 범위) 대학의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기 임용된 모든 직원 (단, 커뮤니케이션팀장, 디지털커뮤니케이션팀장, 협력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교무학사부장, 입학관리부장, 기획예산부장, 총무부장, 정보전산부장은 해당 보직 재임기간 중 조합활동을 제한한다.)과 신규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3급 이상 2. 대학 학사운영직	제5조(조합형태 및 조합원의 범위) 대학의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기 임용된 모든 직원 (단, 커뮤니케이션팀장, <u>디지털커뮤니케이션팀장</u> , 협력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교무학사부장, 입학관리부장, 기획예산부장, 총무부장, 정보전산부장은 해당 보직 재임기간 중 조합활동을 제한한다.)과 신규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3급 이상 2. <u>법인 정규직 외의 직원</u>	제5조(조합형태 및 조합원의 범위) 대학의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기 임용된 모든 직원 (단, 커뮤니케이션팀장, <u>디지털커뮤니케이션팀장</u> , 협력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교무학사부장, 입학관리부장, 기획예산부장, 총무부장, 정보전산부장은 해당 보직 재임기간 중 조합활동을 제한한다.)과 신규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3급 이상 2. 대학 학사운영직	제5조(조합형태 및 조합원의 범위) 대학의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기 임용된 모든 직원 (단, 커뮤니케이션팀장, 협력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교무학사부장, 입학관리부장, 기획예산부장, 총무부장, 정보전산부장은 해당 보직 재임기간 중 조합활동을 제한한다.)과 신규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3급 이상 2. <u>법인 정관상 사무직원(일반직원) 외의 직원</u>

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노동조합(안)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최종 합의(안)
3. 계약직 4. 처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및 소장	3. 계약직 3. 처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및 소장	3. 계약직 4. 처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및 소장	3. 처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 직제개편 사항 반영, 조합원 제외 범위 수정
제 3 장 인 사 제19조(신규채용 및 직종전환) ① 대학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시 인력의 공백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후반기에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직의 사무직으로의 특별채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노사간 협의한다. 제24조(고용안정) 대학은 행정조직 개편 등을 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인 사 제19조(신규채용 및 직종전환) ① 대학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시 인력의 공백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후반기에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직의 사무직으로의 특별채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노사간 협의한다. ③ 대학은 장·단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신규 채용 및 직종전환 세부계획을 조합과 협의한다. 제24조(고용안정) 대학은 직제를 개편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인 사 제19조(신규채용 및 직종전환) ① 대학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시 인력의 공백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후반기에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직의 사무직으로의 특별채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노사간 협의한다. 제24조(고용안정) 대학은 행정조직 개편 등을 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인 사 제19조(신규채용 및 직종전환) ① 대학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시 인력의 공백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후반기에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직의 사무직으로의 특별채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노사간 협의한다. → 현행 유지 제24조(고용안정) 대학은 행정조직 개편 등을 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 현행 유지

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노동조합(안)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최종 합의(안)
제 5 장 복 무 제32조(근무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3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대학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업무시간 외에 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유급휴가) ① 조합원의 연가일수 중 미사용일수 최대 5일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	제 5 장 복 무 제32조(근무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직무와 관련된 경우 근무시간을 10:00부터 18:00까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대학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업무시간 외에 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제36조(유급휴가) ① 조합원의 연가일수 중 미사용일수 최대 5일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 ③ 대학은 조합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	제 5 장 복 무 제32조(근무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3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대학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업무시간 외에 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유급휴가) ① 조합원의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 최대 5일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	제 5 장 복 무 제32조(근무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 현행 유지 제3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대학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업무시간 외에 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구수정 제36조(유급휴가) ① 조합원의 연가일수 중 미사용일수 최대 5일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연가보상비 산정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연가보상 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 → 현행 유지 → 가족돌봄휴가는 2020. 1. 1.자 의무 시행 내용으로 단협 논의 대상에서 제

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노동조합(안)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최종 합의(안)
	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여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한다.		외하며, 총무부에서 휴가 규정 개정(무급휴가)하여 반영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50조(직원 연구비) 대학은 직원의 연구의욕을 북돋고, 대학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공동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퇴직보전금) 대학은 조합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제57조(체육문화행사) 대학은 년1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59조(부가보상) 대학은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공무) 상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사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50조(직원 연구비) 대학은 직원의 연구의욕을 북돋고, 대학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공동연구비를 지급한다. 제51조(퇴직보전금) 대학은 조합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제57조(체육문화행사) 대학은 년1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59조(부가보상) 대학은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공무) 상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사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 <u>잔여 근무 개월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36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위로금</u>을 지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50조(직원 연구비) 대학은 직원의 연구의욕을 북돋고, 대학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공동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퇴직보전금) 대학은 조합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제57조(체육문화행사) 대학은 년1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57조(부가보상) 대학은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공무) 상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사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50조(직원 연구비) 대학은 직원의 연구의욕을 북돋고, 대학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공동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현행 유지 제51조(퇴직보전금) 대학은 조합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 현행 유지 제57조(체육문화행사) 대학은 연1 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 현행 유지 제57조(부가보상) 대학은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공무) 상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사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현행 유지

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노동조합(안) (총82개조 + 부칙 4개 조항)	2019학년도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최종 합의(안)
제60조(출산지원) 대학은 조합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급한다. 제60조(출산지원) 대학은 조합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제60조(출산지원) 대학은 조합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제60조(출산지원) 대학은 조합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 가족수당 인상에 따라 폐지 (단, 단체협약 체결일까지는 유효)

Ⅲ. 2019학년도 임금협약 최종 합의(안)

주요 사항	노동조합(안)	대학(안)	최종 합의(안)																																																		
급여인상률	1.8% 인상 (단,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전년 대비 동결 (단,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 전년 대비 급여 동결(단, 급여의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 2019학년도 성과상여금 외 추가 성과상여금 지급(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학안이 나오면 추후 협의)																																																		
가족수당	<table><tr><th colspan="2" rowspan="2">부양가족</th><th colspan="2">월지급액</th></tr><tr><th>현행</th><th>변경(안)</th></tr><tr><td rowspan="5"></td><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d>동일</td></tr><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원</td><td>동일</td></tr><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20,000원</td><td>동일</td></tr><tr><td>둘째자녀</td><td>20,000원</td><td>60,000원</td></tr><tr><td>셋째 이후 자녀</td><td>20,000원</td><td>100,000원</td></tr></table>	부양가족		월지급액		현행	변경(안)		배우자		40,000원	동일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동일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동일	둘째자녀	20,000원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20,000원	100,000원	현행 유지	<table><tr><th colspan="2" rowspan="2">부양가족</th><th colspan="2">월지급액</th></tr><tr><th>현행</th><th>변경 후</th></tr><tr><td rowspan="5"></td><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d>동일</td></tr><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원</td><td>동일</td></tr><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20,000원</td><td>동일</td></tr><tr><td>둘째자녀</td><td>20,000원</td><td>40,000원</td></tr><tr><td>셋째 이후 자녀</td><td>20,000원</td><td>60,000원</td></tr></table> - 2020. 1. 1.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부양가족		월지급액		현행	변경 후		배우자		40,000원	동일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동일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동일	둘째자녀	20,000원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20,000원	60,000원
부양가족				월지급액																																																	
		현행	변경(안)																																																		
	배우자		40,000원	동일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동일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동일																																																	
		둘째자녀	20,000원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20,000원	100,000원																																																	
부양가족		월지급액																																																			
		현행	변경 후																																																		
	배우자		40,000원	동일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동일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동일																																																	
		둘째자녀	20,000원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20,000원	60,000원																																																	

Ⅳ. 2019학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경과 보고

- 2019. 09. 05.(목) _ 2019학년도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통지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위원장	이 철 환	대표위원	노동조합 집행부
부위원장	이 승 희	위 원	
사무국장	정 광 국	위 원	
대의원회 의장	김 형 진	위 원	대의원
대의원	이 재 욱	위 원	
조합원	여 선	위 원	조합원
조합원	박 동 원	위 원	

- 2019. 12. 18.(수) 12:00 _ 2019학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안) 관련 집행위원회 회의
(동계방학 중 근로시간)
- 2019. 12. 24.(화) 14:00 _ 2019학년도 노사협의회 위원 자체 회의
 - 가.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위원
 - 나. 2018학년도 단체협약 제32조(근무시간)과 제34조(탄력근무)와 관련한 2019학년도 동계방학 중 근로시간 노동조합(안) 회의
 - 1) 1안: 월 ~ 금 10:00 ~ 17:00 근무
 - 2) 2안: 월 ~ 목 09:00 ~ 17:00, 금 09:00 ~ 12:00
 - 3) 3안: 월 ~ 금 15:00 이후 탄력 근무
- 2019. 12. 26.(목) 16:00 _ 2019학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회의(종전과 같이 15:00 이후 탄력 근무 합의)
- 2019. 12. 27.(목) _ 2019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직원 탄력근무 시행 총무부 공문(2019.12.30. ~ 2020.02.14.)

V. 2019학년도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 2019학년도 임·단협 위원

노동조합 측	대학 측
이철환(위원장), 이승희(부위원장), 이종준(기획부장), 김형진(대의원의장), 이영민(대의원)	김상호(총장), 김연희(교무처장), 이운호(학생처장), 안성훈(기획처장), 박홍조(사무처장), 김현섭(총무부장), 김영근(기획예산부장)

■ 2019학년도 노사협의회 위원

노동조합 측	대학 측
이철환(위원장), 이승희(부위원장), 정광국(사무국장), 김형진(대의원의장), 이재욱(대의원), 여선(조합원), 박동원(조합원)	김상호(총장), 김연희(교무처장), 이운호(학생처장), 안성훈(기획처장), 박홍조(사무처장), 김현섭(총무부장), 김영근(기획예산부장)